

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공고

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「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사업지침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조건 불리지역으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서 포 면



□ 조건불리(사업대상) 지역

- 진도·별학도·월등도(비토어촌계)

□ 수산직불금의 신청

- 수산직접직불 사업신청

- 신청자격: 조건불리지역운영위원회(*어촌계 또는 마을단위로 구성)
- 신청시기: 2021. 3. 15. ~ 3. 30.
- 접 수: 서포면행정복지센터

-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어촌마을발전계획서

* 전년도 제출 어촌계: 전년도 제출된 ‘사업신청서’ 및 ‘어촌마을발전 계획서’ 확인·수정·서명 후 제출(별도 송부)

-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

- 신청자격: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계(마을) 어업인으로서, 사업대상(조건불리) 지역에 거주하면서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(어가 단위)
-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-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
* 기본 지급조건은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하며,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업인들 약정신청서 제출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토록 지도하여야 함.

- 신청시기: 2021. 4. 1. ~ 4. 30.(예정)

- 접 수: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(* 각 어촌계)

* 운영위원장은 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·확인하여 서포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

□ 수산직불금의 지급

○ 지급단가: 어가 당 750,000원

- 어업인의 소득보조(어가당 지원금액의 80%)
-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(어가당 지원금액의 20%) 사용

* 어가당 지원금액의 일정금액(20%이상)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.

ex) 어업인 지원(80%) 600천원 +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(20%) 150천원

○ 지급요건

-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함
-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와 어업면허 · 허가 · 신고기간이 유효한자
(기간 :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)
- 어촌계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야 함
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
- 지급시기: 2021. 11월말
- 지급방법
 - 어업인 지급액 : 지급약정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
 - 마을공동기금 지급액 : 관리협약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

□ 제재사항

○ 지급요건 불이행시: 법 시행규칙 <별표>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처리

○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적발된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 제한

○ 약정신청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수산물 판매 및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자
: 법 제30조에 따라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♣ 동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1. 3. 30.까지 서포면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